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국내 주소 변동 신고를 할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신상변동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OO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2. 00. ~ 2024. 1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제1항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‘다만, 제2항 전단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따라 변동사항 확인이 가능한 법 제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국내 주소의 변동 신고는 신청인의 구술 또는 전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.’

제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국내 주소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신상 변동의 신고 등) ① ~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조의2(신상 변동의 신고 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국내 주소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그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.</u>